



2007년도 주요 검사법령 제·개정(I)

1. 선박설비기준 개정[해양수산부고시 제2007-24, 59, 109호('07.4.6. 8.24. 11.2.)]

- 채납기어선 및 총톤수 20톤 미만 어선의 최대승선인원 산정계수 완화
⇒ 최대승선인원 산정계수 : 0.85/1인 ⇒ 0.55/1인
- 총톤수 500톤 이상 선박에 대한 계류설비의 요건 명확화
- 강도, 배치, 계류설비 등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함
- 레이다반사기 설치대상 선박 완화
- 비치대상 완화 : 총톤수 50톤 미만 FRP제 선박 및 목재 선박 ⇒ 총톤수 50톤미만 FRP제 선박 및 목재 선박
- 설치높이 완화 : 수면상 2m이상 높이에 설치 ⇒ 20톤 미만 선박은 수면상 1m이상 높이에 설치, 20톤 이상 선박은 갑판실 상부 등 설치 가능한 높이
- 조타자기컴퍼스 비치대상 완화
- 연해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500톤미만 여객선 등(AIS 비치선박에 한함)에 자기컴퍼스 비치 면제
※ 조타자기컴퍼스 비치를 면제한 선박에 대해서는 자차수정표 비치가 면제되는 휴대용 자기 컴퍼스를 설치토록 함
- 항해선교의 시야확보
- 배의 길이 45미터이상의 어선외의 선박에서 모든 선박으로 확대 (소형선박 제외)
- 어선의 경우에는 어선의 구조 및 어로 특성상 시야확보의 요건을 전부 충족할 수 없으므로 일부 요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
- 항해용 속구 비치 완화 및 면제
- 기압계 : 20톤 이상 어선 ⇒ 원양어선에 한함
- 모든 어선 : 수용측연, 육분의, 및 시진의 비치 면제
- 연해구역 이하 일반선 : 기압계 및 수용측연 비치 면제

2. 선박용물건의 형식승인시험 및 검정에 관한 기준 개정[해양수산부고시 제2007-60, 113호('07.8.24. 11.7.)]

- 레이다반사기 제품검사 및 성능시험 기준 완화
- 제품검사 시 설치높이, 질량, 부피 등의 제한 기준 완화
- 성능시험 기준 완화
- GPS 플로터, 투척식소화기 및 퇴적오니 제거설비에 대한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기준 신설



3. 화물적재고박 등에 관한 기준 개정[해양수산부고시 제2007-91호('07.10.31.)]

- 화물고박지침서 작성대상 화물을 명확히 함
 - 산적고체 및 산적액체화물외의 화물. 다만, 국내 각 항 간에만 운송되는 화물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함으로 명확화

4.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개정[해양수산부고시 제2007-388호('07.10.31.)]

- 화물적재고박지침서의 작성대상을 “화물적재고박 등에 관한 기준” 제3조로 이관 정리

5. 선박복원성기준 개정[해양수산부고시 제2007-95호('07.11.2.)]

- 여객선에 대한 동요시험 생략 근거 마련
 - 선박의 횡요주기를 산출할 수 있는 경우에는 동요시험 생략 가능
- 부유식 해상구조물에 대해서는 계산식 등에 의해서 경하중량 및 중심위치를 산출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복원성시험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
- 여객선 복원성 기준에 국제복원성기준(IS Code)의 일반기준 및 기상기준 수용
- 선박안전법 개정에 따라 새로이 복원성 적용대상이 되는 선박길이 24미터 이상 예인·구조·조사 및 측량에 사용하는 선박의 복원성기준 신설
- 평수구역을 항해하는 12미터 이상 24미터 미만 화물선의 복원성기준 신설
- 여객선 및 어선 외의 선박의 경사우력정 및 횡요각 기준 신설
- 12미터 이상 24미터 미만 어선의 복원성기준 신설
 - 풍속을 15m/s로 적용하여 분석한 GM기준
- 최대승선인원이 13인 이상 낚시어선에 대한 복원성 기준 신설
 - 어선 복원성기준에 추가하여 여객의 이동 및 선박 선회에 의한 횡경사를 10도 이하로 제한하는 한계 경사각기준을 적용하고, 풍속을 19m/s로 적용한 복원성기준 신설
- 부유식 해상구조물에 대한 복원성기준 신설
 - 이동식 시추선, 수상호텔 등
 - 국제기준(이동식 해양구조물 규칙(MODU)) 수용

6. 선박만재흡수선기준 개정 [해양수산부고시 제2007-24호, 103호('07.4.6, 11.2)]

- 고속선에 대한 선박만재흡수선기준 준용 조항 신설
 - 고속선의 시설이 “고속선기준”에 적합한 경우에는 선박만재흡수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간주토록 명문화 함
- 선박안전법 개정에 따른 만재흡수선기준 적용대상 확대
 - 배의 길이 24미터 이상 ⇒ 선박길이 12미터 이상
 - 배의 길이 12미터 이상 24미터 미만 ⇒ 선박길이 12미터 미만
 - 배의 길이 24미터 이상 ⇒ 선박길이 12미터 이상
 - 배의 길이 12미터 이상 24미터 미만 ⇒ 선박길이 12미터 미만